

# 언론분쟁에 나타난 취재관행의 문제

남 재 일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충북중재부 중재위원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월 23일 대전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재일 중재위원이 「언론분쟁에 나타난 취재관행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대전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110여 명의 참석자들은 황성주 중재부장(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I. 들어가는 말

언론분쟁은 언론사와 보도로 인한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언론분쟁을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언론분쟁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헌법 21조 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동조 4항에서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사건의 조정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했을 때 절충점을 찾는 것이 요체이다.

언론의 신뢰도 하락이 언론의 상업성에 손상을 주는 지경이 된 현재의 상황에서 ‘법의 테두리’를 정확히 인식하는 취재관행의 정착은 언론의 상업성을 유지하는 ‘문화자본’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전문직업인주의의 시작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최근의 언론분쟁에 자주 나타나는 분쟁의 쟁점을 통해 ‘법의 테두리’를 제시하고 관련된 취재관행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장기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취재행위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II. 피해사례의 발생 배경과 취재관행

### 1. 오보의 개념과 발생원인

## 주제논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오보에서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오보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허위보도, 사실을 과장한 과장보도, 사실을 왜곡한 왜곡보도, 공정성을 훼손한 편파보도 등을 포괄한다. 지시범위가 분명하게 조작적 정의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보도”, “어떤 형태든 피해를 준 보도”로 초점을 좁혀 보았다.

오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보연구는 오보발생의 원인을 언론산업의 구조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원인과 기자들의 행위 수준에서 비롯된 원인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오보발생의 원인을 산업적이고 구조적인 요인과 정보 수집 및 전달과정에서 기자개인의 자질 문제로 양분하는 것은 오보발생의 원인을 추론하는 영역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산업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기자 개인의 문제는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다. 기자들의 취재관행은 언론의 산업적 속성에 적응한 결과이고, 기자들의 개별취재 행위도 취재관행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귀책사유를 개별 기자로 분명히 할 수 있는 단순한 사실의 확인 소홀도 그 기저에는 속도경쟁의 일상적 작업방식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2. 오보의 유형별 원인과 취재관행

### 1) 취재망의 구조적 성격과 오보

뉴스매체는 정기적으로 일정량의 뉴스를 공급하기 위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기 위한 취재망

을 구축하고 있다. 취재망은 뉴스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리적 공간과 영역을 커버하면서도 최소의 인원으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재망은 ‘공간적 분할’과 ‘전문영역적 분할’로 구성됐다.(Tuchman, 1978)

‘공간적 분할’은 지리적 공간을 바둑판처럼 나누어 각 관할구역(beat)에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등이 주로 이 방식으로 조직된다. ‘전문영역별 분할’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담당하는 전문분야를 경계로 취재망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대개의 언론은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해서 취재망을 구성한다.

이 취재망 안에서 실질적인 취재는 출입처 취재와 현장취재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입처는 정보가 집결되는 정보의 병목이다. 현장은 뉴스 사안이 발생하는 지리적 공간이다. 이상적인 취재는 이 두 가지 방식이 교차되는 것이지만, 대개의 취재는 보다 효율적인 출입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입처 취재는 효율적인 반면 중간에 취재원을 매개해서 정보를 얻는 단점이 있다. 즉 정보를 얻는 경로가 현장관찰이 아닌 취재원 인터뷰(타인의 입을 통해 정보를 얻는 모든 취재행위)에 의존하게 돼 있다. 여기서 오보의 위험성이 발생한다. 취재원의 의도적인 정보조작, 취재원 자체의 잘못된 정보 습득, 전달과정의 기자의 실수 및 곡해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다.

### 2) 상업주의 경쟁과 오보

오보의 발생원인 중 언론산업의 속성에서 기인

하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이 상업주의 경쟁이다. 언론의 상업주의 경쟁은 크게 속보성 경쟁과 선정성 경쟁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마감시간의 존재는 그 자체로는 상업주의 경쟁의 산물이라기보다 정기적으로 뉴스를 생산하기 위한 뉴스생산 공정의 구조적 장치이다. 하지만 마감시간을 당겨서 경쟁매체와 속보성을 다투는 형태로 상업주의와 연관된다. 언론산업의 속성 중 속보성은 광범위하게 뉴스 생산 관행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속보성이 오보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객관적 오보'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객관적 오보'는 날짜, 시간, 장소 등 기사에 표기되는 파편적 사실의 부정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객관적 오보는 행위 차원의 잘못이지만 많은 기자들은 '속보성'을 상황적 요인으로 제시한다. 실제로 오보 발생의 기저에는 속보성이라는 구조적 차원이 있지만 속보성이 기자의 잘못을 정당화할 만큼 직접적인 경우는 드물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면서 매우 긴급한 상황인 경우, 즉 사실 확인을 위한 물리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만 오보의 구조적 차원의 요인으로 속보성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국민의 알권리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고 긴급해야지, 상업주의 경쟁의 관점에서 긴급한 것은 내부사정일 뿐이다. 상당성에 대한 판정에서 보면 기자가 생각하는 '필연성'과 '긴급성'은 상업주의의 관점에서 그런 것일 뿐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상당성'에 대한 인정을 받기 어렵다. 대부분의 '객관적 오보'는 기자들의 행위차원의 실수로 볼 수 있다.

상업주의 경쟁의 또 다른 형태는 선정성이다.

### 3) 기자 집단의 이익을 위한 취재관행의 전유와 오보

취재관행은 언론산업의 구조적 성격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기자들의 작업방식이다. 이런 의미의 취재관행은 언론사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정립된 것이다. 즉 기자들의 묵시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유하고 있는 직업적 관습으로 언론윤리강령을 통해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취재관행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개별기자들의 직업적 이익을 위해 2차적으로 형성되는 '부정적 양태'의 취재관행들이 있다. 낙종을 피하기 위해 무리지어 다니는 패거리 저널리즘(pack journalism)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패거리 저널리즘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자들의 경쟁적 취재가 가져다주는 사실 확인의 과정을 거세함으로써 오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 출입처 취재제도에 의존해서 출입처의 발표 자료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 적는 '발표 저널리즘'도 기자집단의 편의를 위해 출입처 제도를 전유한 '부정적 양태'에 해당한다. 한 기자의 기사를 여러 명이 동시에 제공하는 기사 풀(pool)제도도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 현장기자들이 노동력을 아끼려는 편의적 취재관행이다.

### 4) 개별기자의 실수 및 자질부족과 오보

오보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오보 발생의 원인이 구조적 차원과 직접적 관계없이 기자

## 주제논문

의 행위차원의 문제로 귀인 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기자의 실수, 심리적 편견, 취재경험의 부족, 전문지식의 부족 등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기자의 나태로 인한 사실 확인 소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기자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로 숫자나 이름 등의 오기와 같은 '객관적 오보'로 오보의 계기가 실수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다. '나태로 인한 사실 확인 소홀'은 주로 일방적 주장이나 불분명하고 미심쩍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서 오보를 일으키는 경우로, 사실 확인의 필요는 느끼지만 추가적인 확인 취재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 오보의 유형은 '주관적 오보'가 많다. '심리적 편견'은 사안에 대해 일방향적 시각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한 측면만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경우로 역시 '주관적 오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Ⅲ. 언론분쟁의 유형별 쟁점과 취재관행의 문제점

#### 1. 피해구제 제도로서의 언론중재제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은 민·형사 소송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 제도는 법원이 아닌 법정기구에 의해 언론분쟁의 해결을 추구하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이다. 언론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조정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언론중재제도의 취지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겪지 않고도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언론사와 언론피해자 양자에게 모두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침해 유형으로 본 언론분쟁의 쟁점과 취재관행

언론분쟁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법적 보장 범위를 둘러싼 충돌이다. 그래서 언론분쟁의 쟁점은 결국은 소송사건의 판결 기준을 둘러싼 해석의 충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싸움은 일차적으로는 소송 대상 보도가 인격권 침해의 법적 구성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고, 이차적으로는 인격권을 침해를 했다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지의 문제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격권 침해의 유형별 법적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에 중요한 취재관행의 행태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명예훼손

##### (1) 성립조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 특정, 구체적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의 저하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피해자 특정'은 보도내용 중 기사의 당사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이다. 구

체적으로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본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진위 검증이 가능한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의 범위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우회적으로 암시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은 말 그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피해자 특징이 인정되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없으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 부분은 사실의 진위여부와 관계없다. 허위일 경우가 대체로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요건이 성립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와 같은 증거가 없더라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거나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2005. 7. 15. 선고)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적기구나 언론사이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 비판의 수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언론자유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 분쟁의 쟁점과 취재관행

① **피해자 특징** : 언론은 익명처리 했다고 판단했지만 기사에 나타나는 다른 단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게 된 경우이다. 분쟁의 쟁점은 기사에 표시된 단서들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공표되는 효과를 갖느냐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동시에 익명화 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정착돼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나 집단인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과정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② **구체적 사실의 적시** : 이 요건은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여부, 의견 표명이 단순한 의견개진이었는지 인신공격이었는지 여부가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③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 : 이 요건은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를 판정하는 포괄적인 규정이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느냐 않느냐에 관한 기자의 판단은 동시대의 통념과 상식에 대한 감각을 요구한다.

이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재관행은 피의 사실 보도관행이다. 속보경쟁을 하느라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마치 범죄혐의를 받은 사실을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단정적 어투로 보도하는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

④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중요한 논점은 공적 관심사를 공익을 위해 보도했느냐 여부, 보도사실이 진실이나 여부, 진실이 아닐 경우 상당성의 인정 여부 등이다.

## 2) 초상권 침해

## 주제논문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또는 사회통념상 특정 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초상)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초상권은 촬영·작성 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초상권 침해는 주로 동의 없이 촬영 공표되거나 동의했다 라도 동의의 범위 이상 이용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초상권 침해의 분쟁의 주요 쟁점은 동의의 판단 근거, 동의의 범위 규정, 공익성이 인정되는 보도의 경우 상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연성과 긴급성 여부 등이다.

## IV. 맺는 말

언론분쟁은 산업적 속성 때문에 비롯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기자들의 행위 차원에서 비롯되며, 노력을 통해 상당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분쟁을 일으키는 취재관행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기자들의 자각과 성찰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의 핵심을 취재관행의 문제로 돌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언론분쟁의 대부분은 명예훼손 사안이며, 주로 사건사고, 탐사보도, 폭로성 고발기사 등에 집중된다. 이 분야의 기사가 주로 공격저널리즘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인데,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비교적 연조가 낮은 기자로 취재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자들

이다. 인력배치에서부터 언론분쟁의 소지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허위 사실의 보도는 취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일방적으로 사실을 재단하고 반대 입장에 대한 취재를 통한 사실 확인 절차를 소홀하기 때문에 비롯된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허위보도를 줄여야 하는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힘들면 상당성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저하게 취약하다.

셋째, 상당수 언론분쟁이 제목 및 기사 본문의 과장된 표현 때문에 비롯된다. 이는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선정성 때문에 비롯되는 것으로 노력여하에 따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넷째, 타인의 글이나 말을 인용하는 부분 때문에 언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언론윤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기자 재교육을 통해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기자들이 타인의 말을 인용할 때 전체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법의 테두리'를 인식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다. '상당성'에 대한 개념을 취재과정에서 떠올려보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공익적 내용의 보도에서 시민의 초상을 사용할 때 긴급성과 필연성을 따져보기를 바라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국 언론이 사건중심보도 관행을 탈피해 점점 해설과 내러티브 중심으로 기사체를 바꿔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관과 감정 개입의 폭도 이전보다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기사가 복잡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취재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법의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취재 및 기사작성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 거세질 것이다.

그렇다면 기자들의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먼저 기자 개개인이 오보가 속보성 때문이 아니라 행위차원의 부주의와 나태 때문에 생긴다고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론윤리강령과 보도준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취재과정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편집국은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취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기사 생산의 스케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직적 차원의 변화를 통한 취재관행의 혁신이 없으면 언론분쟁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토 론

사 회 황 성 주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중재부 중재부장

**황성주(사회자, 중재부장) :** 주제발표해주신 남재일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대전KBS 기자) :** 발표자께서는 패거리 저널리즘의 폐해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언론현장에 있는 기자로서 언론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패거리 저널리즘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패거리 취재를 하려고 해도 기사를 한 줄 잘못 보도하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이의제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하게 됩니다.

기사 풀(pool)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기자의 경우 풀에 의해 공급되는 기사도 보도하기 전에 기자는 기사내용을 신뢰할 만한 근거와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 확인한 다음에 보도하게 됩니다. 방송에서는 현장 그림이나 자료화면, 녹취자료 등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보도

## 토 론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풀 기사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성주** : 현장 기자의 취재현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남재일(발표자, 중재위원)** : 언론의 취재관행 중 패거리 저널리즘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최근 3·4년 전부터 취재기자단이나 출입처 제도 등에 대해 언론계 스스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선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로서 취재관행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원선(한남대 법학과 교수)**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표현은 구체적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하고 피해가 발생하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느 것을 더 보호하여야 하는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이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여부를 판단할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진실한 사실인지, 진실하지 않다면 행위자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됩니다.

반면,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책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황성주** :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송인준(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중재위원)** : 공익적인 관점에서 비리가 발생한 언론사의 이름을 게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언론이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 비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관례에도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 실명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은중(대전충남기자협회장, 연합뉴스 부장)** : 과거에는 기자들이 기사를 한 번 쓰면 그것으로 끝이었는데, 요즘은 기사를 잘못 쓰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 바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며 올바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보성을 띠는 통신사에 근무하면서 소송에도 많이 휘말려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기사는 가급적이면 다루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언론의 기능도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공주에서 발생한 기자 비리 사건의 경우 일부 기자들은 무늬만 기자이지 기자가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구속된 기자는 전과 기록이 A4 용지가 한 장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기자 개개인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종사원들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고용하고 있는 언론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재일** : 지역신문의 실패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문제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건설사가 언론사를 만들고 언론사는 그 건설 회사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희섭(대전KBS 편성제작팀장)** : 오늘 황토팩 관련 보도 문제로 KBS 담당 PD가 기소되었습니다. 충청 패트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대전에 있는 모 오피스텔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여 경매에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이 사회 공익적인 측면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명예훼손 우려 때문에 그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를 특정하지 않고 방송하였습니다. 비리 기업들의 실명을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황성주** :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면 실명을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차재영(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재위원)** : 언론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할 때, 언론사 자체적으로 법률적 자문이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의 질의 중 비리기자의 소속 언론사에 대한 실명 공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

시하지 않는 것은 동종 업종의 봐주기 관행인데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히 밝혀야만 회사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명예에 치명타를 입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낡은 관행은 타파해야 합니다.

**이규호(변호사, 중재위원)** : 언론은 보도에서 당사자를 특정 하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발프로그램에서는 명예훼손성립 여부를 생각하지 말고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먼저 신경 써야 하며 위법성만 조각된다면 시행사와 시공사 명칭을 그대로 특정해 보도해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한상곤(변호사)** : 신문과 방송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더욱 상업화되고 있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자극적이고 임팩트가 강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고 봅니다. 방송사는 방송영상과 멘트를 함께 보도하기 때문에 영상과 멘트가 결합되어 피해를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방송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과 기준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황성주** : 최근 인터넷매체가 생활 속에 편입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의 기술적인 발전에 맞추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토 론

**권 성(언론중재위원장) :** 발제자께서 일선 기자의 경험과 학문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표해 주셔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사회자께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두루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고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교육교재를 만들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소장도 교육수요가 있는 곳에 나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피해구제에 관한 축적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 조정중재 사례를 분석한 조정중재사건 분석보고서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나온 법원의 언론소송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나 자료실에 오셔서 널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선 기자들은 취재보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어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전체주의적인 역사를 경험하였는데 민주화되면서 개인 인격권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가양적인 개인 인격권이 있다는 것이 시대정신이며 헌법의 기본정신임을 생각한다면 취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주제발표해주신 남재일 위원과 사회를 맡아 수고해주신 황성주 중재부장, 각계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